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19. 7. 2.>

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및 업무(제23조 관련)

1.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종류

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은 장기구득 의사와 장기구득 간호사를 말한다.

2. 장기구득 의사의 자격 및 업무

가. 장기구득 의사는 장기등의 이식수술 또는 뇌사자 진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환자 진료 경력이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.

나. 장기구득 의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) 장기구득업무와 관련된 의학적 사항에 대한 자문

2) 장기구득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의학적 관리·감독

3) 장기구득 간호사에 대한 교육·훈련

다. 장기구득 의사는 장기구득 의사로서의 업무와 의료기관의 의사로서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
3. 장기구득 간호사의 자격 및 업무

가. 장기구득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환자 관리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
1) 장기구득기관에서 6개월 이상 장기구득업무를 수행한 사람

2)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

3) 6개월 이상 1)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나. 장기구득 간호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) 뇌사추정자 및 뇌사자의 장기등의 기증·적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의 업무

가)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뇌사추정자 통보를 받은 경우 현장 출동

나) 뇌사추정자 가족에 대한 장기등 기증에 관한 정보 제공, 상담 및 설득

다)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장기등 기증 동의 및 법 제22조에 따른 뇌사추정자 가족의 장기등 적출 동의 여부 확인

라) 뇌사추정자의 과거 병력 및 사회력 조사

마)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뇌사판정 신청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뇌사판정 결과 통보에 대한 절차적 지원

바) 뇌사자 가족의 장기등의 기증·적출 동의서 작성 지원

사) 장기등기증자 시신의 봉합 및 인도(引渡)에 대한 지원

아) 장기등기증자 유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사후 관리

2) 뇌사추정자 및 뇌사자의 장기등의 상태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검사와 처치 업무

가) 검사 업무

(1) 혈액검사

(가) 일반혈액검사(CBC, Electrolyte, LFT, BUN/Cr, PT/APTT)

(나) B형간염 항원・항체검사, C형간염 항원・항체검사(HBsAg, Anti-HBs Ab, HBcIgGAb, Anti-HCVAb)

(다) 매독검사, 에이즈검사(VDRL, Anti-HIVAb)

(라) CM바이러스검사, EBV바이러스검사(CMVIgM/IgGAb, EBVVCAIgM/IgGAb)

(마) 혈액형검사(ABO/Rh type and antibody screening)

(바) 동맥혈검사(ABGA)

(2) 소변검사(Urine analysis with microscopy, urine osmolarity)

(3) 미생물배양검사(Microbiology)

(가) 혈액배양검사(Blood culture)

(나) 소변배양검사(Urine culture)

(다) 가래배양검사[Transtracheal aspiration culture(AFB panel 포함)]

(라) CM바이러스배양검사[CMV culture(blood, TTA, urine)]

(4) 세포면역검사

(가) 사람백혈구항원검사(Human Leukocyte Antigen typing)

(나)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(Human Leukocyte Antigen cross match)

(5) 특수상황 시 추가되는 검사

(가)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경우: 혈액검사(CK, LD, CKMB, Troponin-I)

(나) 발작(Seizure) 병력이 있는 경우: 혈액검사(Myoglobin)

(6) 영상학적 검사

(가) 흉부 사진(Chest PA)

(나) 복부초음파검사[Abdominal SONO(portable)]

(7) 그 밖의 특수검사

(가) 심전도검사(EKG)

(나) 심초음파검사[Echocardiogram(portable)]

(다) 뇌파검사[EEG(portable)]

나) 처치 업무

(1) 정맥 주입로(Line) 확보

(가) 중심정맥관(Central-line) 확보

(나) 동맥압 측정관(Arterial-line) 확보

(다) 폐동맥압 측정관(Swan-ganz line) 확보

(2) 기도(Airway) 관리 및 기관 내 튜브 흡인(Endotracheal-tube suctioning)

(3) 위장관 튜브 삽입(Levin-tube insertion)
(4) 안구 기증의 경우 눈 보호(Eye protection)
(5) 저체온의 경우 보온(Warming)
(6) 활력징후 측정(Vital sign check)
(7) 중심정맥압 및 폐동맥압 측정(Central venous pressure, pulmonary arte ry pressure check)
(8) 섭취량/배설량 측정(Input/Output check)
(9) 혈당 측정(Blood sugar test)